

의안번호	2206304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5.2.14.
추계번호	24D64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상담·직업훈련 프로그램·진료비의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9,000만원, 2030년 14억 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6억 4,800만원(연평균 11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진로·직업상담 지원	453	471	490	508	528	2,450	490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436	520	619	737	878	3,190	638
진료비 지원	1	1	2	2	2	8	2
합계	890	992	1,111	1,247	1,408	5,648	1,13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등의 책무)	부상 제대군인의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 재교육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14조 (취업지원 등)	진로·직업상담 등의 지원 대상을 “전역 후 3년 이내의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서 “부상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제3항제2호)	재량규정
3	안 제19조 (교육지원)	부상 제대군인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4	안 제20조 (의료지원)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진료비(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 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상 제대군인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특화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제6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지며, 해당 사항이 개별조문에 규정되어 있음
2	안 제14조 (취업지원 등)	0	—
3	안 제19조 (교육지원)	0	—
4	안 제20조 (의료지원)	0 (진료비)	—
		×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함 —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예산 26억 7,800만원(2025) —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예산 14억 5,100만원(2025)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서 “국가 등의 책무”는 선언적·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별조문을 추계하는 대신 “국가의 책무”를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서 ‘부상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 재교육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조문[안 제12조(취업지원 등)·제19조(교육지원) 및 제20조(의료지원)]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개별조문을 추계하는 대신, “국가의 책무”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부상 제대군인 대상 “진로·직업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진료비”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사사업(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진료비 지원)을 참고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진로·직업상담”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추가되는 인원은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인데, 현시점에서 이들의 인원을 파악할 정보가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2024년 330명)을 기준으로 연평균증가율(19.1%)¹⁾를 적용하여 추정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²⁾, 명목임금상승률³⁾,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⁴⁾을 각각 반영하여 추정함
- 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기간,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의무복무 경상이자 연평균증가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의무복무 경상이자(명)	164	218	248	293	330	19.1%

자료: 국가보훈부

2) 소비자물가상승률(2024. 1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명목임금상승률(2024. 1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6%	3.9%	3.8%	3.8%	3.8%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4. 1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 요율	11.234%	11.330%	11.425%	11.519%	11.614%	11.7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직업상담 지원 확대(안 제14조제3항)

□ 개정안은 진로·직업상담 등의 지원 대상을 “전역 후 3년 이내의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부상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현행법 제14조제3항제1호⁵⁾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부상과 관계없이 진로·직업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지원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인원은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임

□ 2024년 기준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경상이자)이 330명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취업·직업상담 등의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330명임

[표 2]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현황: 2020~2024년

(2025.2.7. 기준,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장기복무		50,574	54,987	60,383	66,172	74,126
중기복무		31,348	33,852	36,810	40,240	44,532
의무 복무	경상이자	164	218	248	293	330
	취업맞춤형 특기병	777	995	1,122	1,252	1,342
	저소득 모범장병	32	47	53	60	65
	소계	973	1,260	1,423	1,605	1,737
합계(누적)		82,895	90,099	98,616	108,017	120,395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중기·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취업창업 상담사: 107명, 상담사 1명당 평균 임금: 39,176,402원
- 상담사 1명당 제대군인 관리인원: 333명

5)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추계에서 향후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진로·직업상담 인원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10개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상담사 1명씩 총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취업창업 상담사 1인당 제대군인 관리인원은 330명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2024년 기준 330명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상담사 증원인력은 1명임
 -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된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330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학교나 직장에 복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고용노동부 등 취업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상담의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10개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상담사 1명씩 총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없이 진로·직업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창업 상담사 10명을 증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진로·직업상담 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임금	인원(A, 명)	10	10	10	10	10	—
	임금 단가 ¹⁾ (B, 천원)	40,704	42,251	43,857	45,523	47,253	—
	소계(C=A×B, 백만원)	407	423	439	455	473	—
기관부담금 ²⁾ (D)		46	48	51	53	55	—
추가재정소요(E=C+D)		453	471	490	508	528	2,450

주: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나. 부상 제대군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안 제19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국가보훈부는 현행법 제13조⁶⁾에 따라 중·장기 제대군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신청률: 10.8%(전문교육 위탁 교육비), 53.5%(직업능력 개발 교육비)

[표 4]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개요

교육과정	내용	교육기간	장소	지원사항
전문기관 위탁교육	취업 관련 기술·기능·자격증	1~6개월	전문교육기관	1인 120만원 (자부담10%)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역(예정)자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연 중	정부공인 훈련기관	1인 150만원 (자부담20%)
사이버교육	자격증, 공무원·공채시험, 어학, IT 등	1~2개월	사이버연수원	1인 연 12과목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부상 제대군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1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 인원 ¹⁾ (A)		468	558	664	791	942	-
전문기관 위탁교육	신청률(B)	10.8%	10.8%	10.8%	10.8%	10.8%	-
	지원한도(C, 만원)	120	120	120	120	120	-
	소계(D=A×B×C, 백만원)	61	72	86	103	122	-
직업능력 개발교육	신청률(E)	53.5%	53.5%	53.5%	53.5%	53.5%	-
	지원한도(F, 만원)	150	150	150	150	150	-
	소계(G=A×E×F, 백만원)	376	448	533	635	756	-
사이버교육 ²⁾		-	-	-	-	-	-
합계(H=D+G, 백만원)		436	520	619	737	878	3,190

주: 1) 2020~2024년 의무복무 제대군인(경상이자)의 연평균증가율 19.1% 적용

2) 국가보훈부가 계약하여 제공 중인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6)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부상 제대군인 진료지원 확대(안 제20조제4항)

- 개정안은 군복무 중 발병·악화된 질병이 공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질병⁷⁾에 대해 현재 진료비(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 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 진료비(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6] 진료비(인과관계 불분명 질병) 지원내역: 2020~2024년

		2020	2021	2022	2023	2024 ¹⁾	합계	연평균
보훈병원	연인원(A, 명)	59	49	52	70	43	273	55
	진료비 지원(B, 천원)	671	694	1,403	3,011	1,271	7,050	1,410
위탁병원	연인원(C, 명)	-	-	-	-	-	-	-
	진료비 지원(D, 천원)	-	-	-	-	-	-	-
합계	연인원(E=A+C, 명)	59	49	52	70	43	273	55
	진료비 지원(F=B+D, 백만원)	1	1	1	3	1	7	1

주: 2024.10월 기준 연인원(36명)과 진료비 지원액(1,059천원)을 12월로 환산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현재 50% 지원인 진료비(본인부담금)를 100% 수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백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진료비 지원 (백만원)	1	1	2	2	2	8

주: 2024년 진료비 지원액을 기준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7) 제20조(의료 지원)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상담·직업훈련 프로그램·진료비의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9,000만원, 2030년 14억 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6억 4,800만원(연평균 11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진로·직업상담 지원	453	471	490	508	528	2,450	490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436	520	619	737	878	3,190	638
진료비 지원	1	1	2	2	2	8	2
합계	890	992	1,111	1,247	1,408	5,648	1,13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